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20 선고 2021가합43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중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4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충청남도 등 일원에서 낙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생산물의 관료와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20. 3. 2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C본부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을제1호증 참조)		
계 약 자	발 주 D 조 합	B조합 조합장 E
	계 약 상 대 자	○ 상호(법인명칭): A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F
계 약 내 용	공 사 명	B조합 C본부 창고신축관련 토목공사
	계 약 금 액	금칠억오천칠십오만원정(W750,750,000) (공사금액: W682,500,000, 부가가치세: W68,250,000)
	계 약 보 증 금	금삼억삼십만원정(300,300,000)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현 장	천안시 서북구 G 외 8필지
	지 체 상 금 율	1일 1,000분의 1
	착 공 년 월 일	2020. 03. 31.
준 공 년 월 일		2020. 09. 30.
【첨부】 공사계약일반조건(갑 제1호증의 2 참조)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

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8조(계약이행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준공기한을 2020. 9. 30.에서 '2020.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갑 제1호증 참조).

다. 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2020. 3. 27. 보험계약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300,300,000원, 보험기간 '2020. 3. 26. ~ 2020. 9. 30.'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을 2020. 12. 31.로 연장함에 따라 원고는 2020. 10. 23. H과의 사이에 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도 2020. 3. 26. ~ 2020. 12.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변경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보험사고 발생

- 1) 이 사건 공사는 건축설계도면 완성이 지연되고, 원고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이 더하여져 이 사건 도급계약상 변경된 준공기한인 2020. 12. 31.까지도 준공되지 못하였다.
- 2) 또한 원고의 채권자 I 주식회사는 2020. 12. 24.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8,457,560원을 청구채권으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 2020카단12042호)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채권자 J 주식회사는 2020. 12. 30.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0,000,000원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 2020카단12054)을 받았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3) 또한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K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 203,430,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직불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통보 및 원고의 공사포기

- 1) 피고는 2021. 1. 5.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2) 원고는 2021. 1. 8.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바.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21. 5. 26. H에 보험금 300,3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며, H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① 원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배상하기로 하되, 피고가 H에 60,000,000원이 아닌 가입보험금 전액 300,30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60,000,000원은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240,300,000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을 공급한 채권자들이나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는 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H에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여 H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초과하는 240,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완성된 창고를 인도하였는바,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몰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으로써 24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7조의 계약보증금 몰수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다. ③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 중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며(민법 제741조 참조),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과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 8. 공사포기각서를 보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같은 해 1. 12. L 주식회사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99,682,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결국 예정된 준공기한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1. 4. 30.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마치게 되어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상당하다.

③ 피고의 위와 같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60,000,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한다거나, 이 사건 보험금 중 위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④ H 약관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H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보험금을 가지급조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H에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7조 제1항 규정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H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4조 제5항은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월별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20조 제1항은 계약대상자는 제19조 제3항 각호의 1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 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연장해 준 준공기한인 2020. 12. 30.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공정계획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1. 1. 8.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를 포기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계약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타 원고의 손해발생 여부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원고를 상대로 실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여 원고가 H에 구상금을 변제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해서는 안될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7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몰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원, 판사 유가형, 판사 김성하

1) 제19조 (지체상금)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대상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생략)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